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. 8. 17 선고 2017가단900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(개명전 성명 : C)

변론 종결 2018. 7. 13.

판결 선고 2018. 8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3. 2. 4. 접수 제92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형석

별지